



홍준표 전 시장 등,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경찰청은 홍준표 등 사건 관계자 모두를 출국금지하라!

-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휘 전 대구시공무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원명부 불법입수와 유출,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번호섞기'를 통한 불법여론조사 통해 경선 투표결과 왜곡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홍준표 전 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휘 전 대구시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먼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여론조사비용 대납건입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에 따르면, 21대 총선 때 홍준표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용은 박재기 전 사장이 대납했고 차명입금까지 포함 2천만원에 달합니다.

강혜경씨가 정리한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과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의뢰건은 현금으로 수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에 공개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청구서 3장을 보면, 모두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2020년 3월과 4월초경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비용으로 5,6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 여론조사비용 대납건입니다.

2021~2022년 대선 경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최용휘씨는 총 10여 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지인 박기표씨 명의로 총 1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비용 약 4,37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구지역 당원명부 불법입수, 불법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용휘씨와 강혜경씨의 2022년 3월 21일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 내용을 보면, 최용휘씨가 강혜경씨에게 ‘대구당원’ 명부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보내주고, 엑셀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를 알려준 정황이 확인됩니다. 당일 통화녹음에 따르면, “제가 카톡으로 대구당원명부 보내드렸거든요”, “그걸로 그냥 대구시장 거, 세분만 넣어서 저번(3월 11일 조사)처럼 설문지 그대로 해서 좀 돌려주시겠어요? 대구시장 김재원, 권영진, 홍준표 들어가 있는 거” 라고 ‘번호 섞기’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후에도 최용휘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당원명부 번호 섞기’ 수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로우데이터와 당원 지지성향 파악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미래한국연구소(고발외 강혜경, 김태열 등)측은 수차례 명부를 만들어 USB에 담아 피고발인 측에 넘긴 정황이 있습니다.

‘당원명부’ 유출 내지 누설 행위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여론조사결과 ‘로데이터’ 파일과 ‘대구결과 DB-매칭자료’ 파일 등을 제공받은 행위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업무 방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최용휘씨는 ‘국민의힘 대구지역 당원명부’를 권한없이 유출했고 ‘번호섞기’ 등 불법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의 투표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하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홍준표 전 시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홍준표, 박재기, 최용휘, 박기표 등 홍준표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출국금지하라!

둘째, 홍준표, 박재기, 최용휘, 박기표 등 홍준표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라!

셋째, 경찰청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고발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2025. 4. 2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첨부>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조 (정의)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